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49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4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4
2. 결의안의 발의 배경	4
3. 결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5
4. 종합의견	7
※ 참고자료	9
1.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에서 제출한 ‘히젠도’ 관련 기록	9
2. 일본 법률 관련 조항 원문 및 번역문	10

I. 제안 및 회부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27인

나. 제안일자 : 2025년 1월 6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월 7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에 보관된 히젠도(肥前刀)는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가담했던 토오 가츠아키(藤勝顯)가 1908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櫛田神社)에 기증하여 보관 중인 일본도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1895년 음력 8월 20일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왕후(1897년 명성황후로 추존)를 직접 살해한 인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살인범으로 현상수배 되었던 사람이다.

을미사변의 범행에 사용되었던 살인 흉기가 일본 신사에 남아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격과 모욕감을 줌과 동시에 우호적 한일관계를 토대로 열어가야 할 새로운 시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신뢰와 우호에 기반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히젠도를 압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히젠도(肥前刀)는 을미사변 당시 조선 왕후 살해에 사용된 살인도로,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櫛田神社)에 보관되어 있음.

왕후를 살해한 토오 가츠아키(藤勝顯)는 조선 정부에서 현상금을 내걸었던 살인 용의자이고,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음.

토오 가츠아키는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석방된 뒤 범행에 사용되었던 칼을 쿠시다 신사에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고 자백한 바 있음.

히젠도의 칼집에는 ‘늑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는 의미의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음.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여우사냥’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함.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奉納記錄)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하여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토오 가츠아키의 범행 당시 히젠도가 사용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임.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사사로이 보관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조선의 왕후 살해에 사용된 흉기가 하나의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어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히젠도를 적절하게 처분할 것을 촉구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은 명성황후 살해사건(이하 ‘을미사변’)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토오 카츠아키가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히젠도’를 일본 정부가 압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 결의안의 발의 배경

을미사변이 당시 주한공사 미우라 코로(三浦梧樓)의 주도로 일본인들의 개입 하에 이뤄졌다는 것은 열강 외교관들의 기록¹⁾ 및 학계의 연구결과 등으로 일견 사실로 인정되고 있으나,

당시 일본 정부가 관련자 48명을 히로시마 감옥에 수용한 후 재판을 통해 다음해 1월 20일 증거불충분이라는 명목으로 무죄판결을 내리고 이들을 석방하였고²⁾, 이후 일본 정부의 사건 은폐 노력과 역사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가해행위와 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명과 책임 추궁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음.

1) 이민원,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 국학자료원, p. 90~100.

2) 「신편 한국사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I. 러·일간의 각축, 국사편찬위원회, p.40~41

시해 주범이 일본 장교 또는 군인일 경우 일본의 책임소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해 주범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나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어 역사학자마다 상이한 시해범(일본 낭인 자객, 장교 또는 군인³⁾)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임.

동 결의안에 따르면, 2006년 문화재제자리찾기⁴⁾(대표 혜문)단체 등은 쿠시다 신사를 방문해 관련 기록⁵⁾을 확인한바 토오 카츠아키⁶⁾(藤勝顯)가 을미사변의 용의자이고 그가 신사에 봉납한 ‘히젠도’가 명성황후 살해사건의 범행 증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3. 주요 내용 검토

안 주문 제1호는 을미사변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당시 사건에 일본인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⁷⁾하다고 판단되며,

3) 「신편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야마베 겐타로(일본학자), 최문형, 강창일은 낭인무사인 테라자키 타이키치(寺崎泰吉)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반면 박맹수(원광대학교 교수)와 이종각(동양대 교수)은 일본군 경성수비대의 소위인 미야모토 타케타로(宮本竹太郎)를 범인으로 지목함.

김영수, 「조선의 국모는 누가 죽었나?」, 명성황후 추모 사업회, p 116~117

4) 동 단체는 이후 일본 외무성에 명성황후 살해 칼 ‘히젠도’ 폐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2010년 ‘히젠도 환수위’를 구성해 수년간 일본정부와 쿠시다 신사를 상대로 ‘히젠도’의 압수 폐기를 요청해 왔고, 우리 위원회에도 19대 국회 및 20대 국회에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이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5) [참고자료 1]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에서 제출한 ‘히젠도’ 관련 기록

6) 사건 당시 살해 용의자들의 수기와 증언들을 적어 놓은 책인 쓰노다 후사코의 「명성황후 : 최후의 새벽」에 따르면 데라사키의 편지에는 “나카무라 다테오, 토오 가츠아키, 나(데라자키) 세 사람은 국왕의 제지를 무시하고 왕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라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에 의하면 “나카무라 다테오가 곤녕합(坤寧閣)에 숨어 있던 명성황후를 발견하여 넘어뜨린 후 처음 칼을 대었고, 곧이어 달려온 토오 카츠아키가 두 번째로 칼을 대어 절명시켰다.”고 하고 있고,

김영수의 앞의 책에 따르면 일본측 사료에 토오 카츠아키(藤勝顯)를 민간인 중 ‘하수인’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토오 카츠아키는 민간인 신분으로 당시 사건에 관계된 자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임.

7) 2025년 2월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을미사변과 관련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음

나아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을 둔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당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안 주문 제2호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을미사변 당시 살인 도구로 사용된 ‘히젠도’를 압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히젠도’가 범행증거물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일본 정부는 자국 관계 법률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신사는 일본의 「종교법인법」⁹⁾에 따른 종교법인으로 ‘히젠도’는 일본 쿠시다 신사의 사유재산이지만, 일본 헌법 제29조¹⁰⁾의 재산권 규정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진실을 규명한 이후 쿠시다 신사와 협의를 통해 ‘히젠도’를 적절히 처분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본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압수 및 인도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결의안이 지목하고 있는 ‘히젠도’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라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동 결의안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쿠시다 신사에 ‘히젠도’를 봉납한

8) 「일본헌법」 제19조(몰수) ① 다음에서 열거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를 조성한 물건

②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한 것이어도 범죄 후에 그 자가 정을 알고 취득한 것인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9) 「일본종교법인법」 제2조(종교단체의 정의) 이 법률에서 종교단체란 종교의 교의를 넓히고 의식행사를 실시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예배시설을 갖춘 신사, 절, 교회, 수도원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단체

10) 「일본헌법」 제29조(재산권)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토오 카츠아키는 정황상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낭인 중 한 명으로 추론할 수는 있으나 그가 직접 범행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이상 ‘히젠도’가 범행도구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종합의견

동 결의안이 주장하고 있는 을미사변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히젠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는 을미사변에 대한 역사적 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용의자 토오 가츠아키(藤勝顯)가 실제 살해범인지와 ‘히젠도’가 살해사건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일본 정부에 을미사변에 대한 사과 및 진상 규명 촉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경우 ‘히젠도’의 압수를 포함한 적절한 처분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정치권의 세대교체로 인해 과거와 같은 갈등 조절이 어려워지고 최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의 입장이 악화되고 있는 점¹¹⁾을 고려할 때 한일 의회외교 차원에서의 다각적 접근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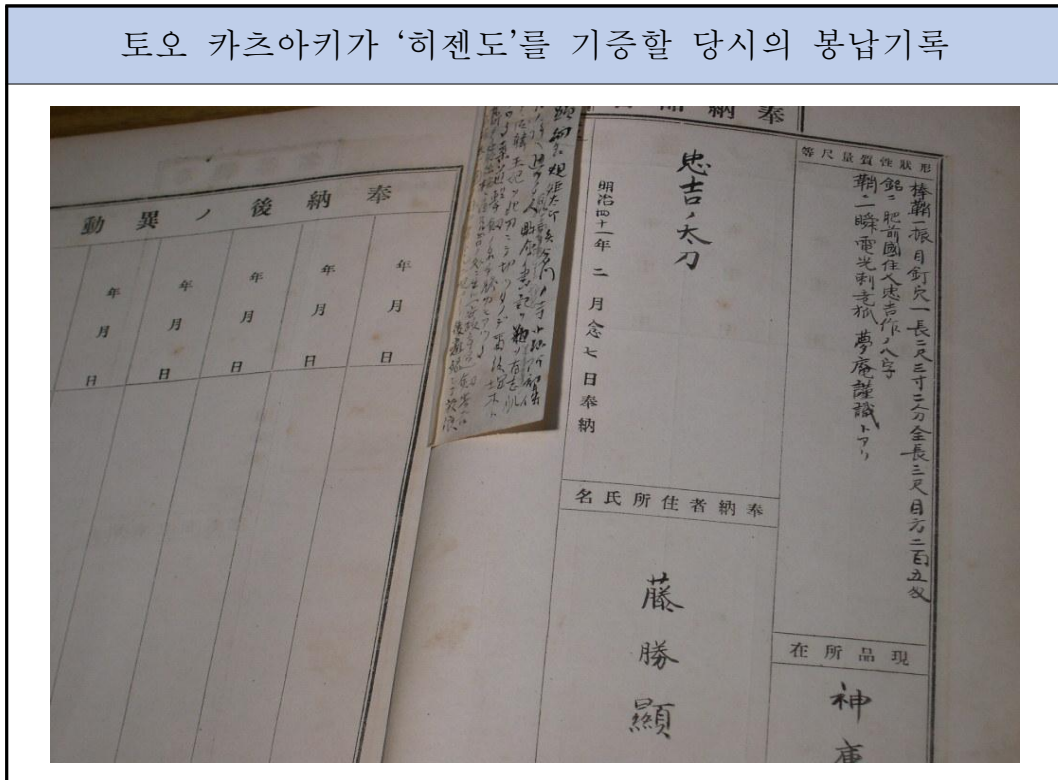
11) 국회입법조사처,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의회외교 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 (2024.12.6.)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가 과거사 관련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명성황후의 시해 주범 등 관련하여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고 학자마다 상이한 시해범을 지목하고 있는 등 사건의 전모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일본 정부의 사과 및 히젠도의 인도 등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70

[참고자료 1]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에서 제출한 ‘히젠도’ 관련 기록

토오 카즈아키가 ‘히젠도’를 기증할 당시의 봉납기록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보관된 ‘히젠도’



[참고자료 2] 일본 법률 관련 조항 원문 및 번역문

< 일본 헌법 원문 및 번역문 >

원문	번역문
第二十九条 財産権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2 財産権の内容は、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3 私有財産は、正当な補償の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제29조 ①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일본 형법 원문 및 번역문 >

원문	번역문
(没収) 第十九条 次に掲げる物は、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犯罪行為を組成した物 二) 犯罪行為の用に供し、又は供しようとした物 三) 犯罪行為によって生じ、若しくはこれによって得た物又は犯罪行為の報酬として得た物 四) 前号に掲げる物の対価として得た物 2 没収は、犯人以外の者に属しない物に限り、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犯人以外の者に属する物であっても、犯罪の後にその者が情を知って取得したものであるときは、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	제19조(몰수) ① 다음에서 열거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를 조성한 물건 2. 범죄행위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3. 범죄행위에 의해 생기거나 그에 의해 얻은 것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 4. 전호에서 열거한 것의 대가로 얻은 물건 ②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한 것이어도 범죄 후에 그 자가 정을 알고 취득한 것인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일본 형사소송법 원문 및 번역문 ＞

원문	번역문
第二章 公訴	제2장 공소
第二百五十条 2 時効は、人を死亡させた罪であつて禁錮以上の刑に当たるもの以外の罪については、次に掲げる期間を経過することによつて完成する。 一) 死刑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二十五年 二) 無期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十五年 三) 長期十五年以上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十年 四) 長期十五年未満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七年 五) 長期十年未満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五年 六) 長期五年未満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罰金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三年 七) 拘留又は科料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一年	제250조 ② 시효는 사람을 사망케 한 죄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15년 3. 장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10년 4. 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7년 5.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5년 6.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3년 7.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1년

< 일본 종교법인법 원문 및 번역문 >

원문	번역문
(この法律の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宗教団体が、礼拝の施設その他の財産を所有し、これを維持運用し、その他その目的達成のための業務及び事業を運営することに資するため、宗教団体に法律上の能力を与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 2 憲法で保障された信教の自由は、すべての国政において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従つて、この法律のいかなる規定も、個人、集団又は団体が、その保障された自由に基づいて、教義をひろめ、儀式行事を行い、その他宗教上の行為を行うことを制限する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제1조(법률의 목적) ① 이 법률은 종교단체가 예배시설이나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유지운용하며 기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나 사업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종교단체에게 법률상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모든 국정에 있어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집단 또는 단체가 그 보장된 자유에 근거하여 교의를 넓히고 의식행사를 실시하며 그 이외에 종교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宗教団体の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宗教団体」とは、宗教の教義をひろめ、儀式行事を行い、及び信者を教化育成することを主たる目的とする左に掲げる団体をいう。 一 礼拝の施設を備える神社、寺院、教会、修道院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団体 二 前号に掲げる団体を包括する教派、宗派、教団、教会、修道会、司教区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団体	제2조(종교단체의 정의) 이 법률에서 종교단체란 종교의 교의를 넓히고 의식행사를 실시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예배시설을 갖춘 신사, 절, 교회, 수도원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단체 2. 전호에서 열거한 단체를 포괄하는 교파, 종파, 교단, 교회, 수도회, 주교구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단체
(法人格) 第四条 宗教団体は、この法律により、法人となることができる。 2 この法律において「宗教法人」とは、この法律により法人となつた宗教団体をいう。	제4조(법인격) ① 종교단체는 이 법률에 의해 법인이 될 수 있다. ② 이 법률에 있어 종교법인이란 이 법률에 의해 법인이 된 종교단체를 말한다.